

담양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 예고

「담양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예고합니다.

2025. 05. 13.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 담양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군수의 책무 규정을

통해 정책적 집행을 보장하기 위함. 또한, 응급안전관리요원의 처우 개선 사항과 구체적 지원등을 명시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환경과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의 가정에 맥내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 응급관리요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종사자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군수의 책무 명시(안 제3조)

라. 응급관리요원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마.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7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5. 5. 13. ~ 5. 18.(5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05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이란(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의 가정에 댁내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수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를 말한다.
3. “응급관리요원”이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종사자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란 「노인복지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수가 공모를 통해 선정 또는 지정하고, 응급관리요원을 고용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응급관리요원 지원사업) 군수는 응급관리요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급관리요원의 역량 강화 교육
2. 응급관리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3. 응급관리요원의 안전 보장
4. 그 밖에 응급관리요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① 군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응급관리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관리와 응급관리
요원 지원사업을 위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